

노조 간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제기준들

- △ 발표: 윤희원 인더스트리얼 자문위원
- △ 토론: 정혜원 전국금속노동조합 국제국장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차장
- △ 사회: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일 시: 2013년 11월 28일(목) 오후 4시
- 장 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 주 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 후 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발표

노조 간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제기준들

윤효원 인터스트리올 자문위원

토론1

노조 간부라면 알아야 할 국제기준들 토론문1

정혜원 전국금속노동조합 국제국장

토론2

노조 간부라면 알아야 할 국제기준들 토론문2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차장

노동조합 간부가 알아야 할 국제기준 토론회 토론문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차장

1. 기업관련 국제기준의 동향

- 2011년 UN총회에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이 통과된 이후에, 이행지침에 근거하여 국제기준이 변화되고 있음.
-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기는 하지만 국제사회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기업에 인권 존중 책임이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이에 대한 활용을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EU국가를 중심으로 이행지침 이행을 위한 국가별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국가에서 최근에 기업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음.(영국, 중국, 인도)
-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더 이상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당 기업 혹은 해당 기업이 문제를 일으킨 국가의 책임으로만 인식하지 않음.(예: 포스코 인도 제철소 문제에 대해서 2013년 10월 1일, 유엔의 8개 인권영역 특별보고관 및 전문가 그룹들이 공동으로 입장표명.)

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현 단계에서 정부에 직접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44개 국에 NCP설치, OECD차원에서 매년 각 NCP에 보고를 받음, 인권 파트가 신설되고 NCP에 대한 동료평가가 실시됨.)
- 선진국에서는 점차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전환해 가고 있음(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그 결과 자국 정부가 운용하는 연기금에 대해 투자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까지 폭넓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2013년 5월, 노르웨이 NCP는 자국연기금에 대해서 포스코가 제대로 인도 제철소 인권보호 대책을 세우지 않았음에도 투자하고 있던 이유로 가이드라인 위반 결정을 내림.)

□ 한국NCP는 그동안 유명무실한 존재였음. 그러나, 최근 한국정부는 NCP구조를 개편하였음. 여전히 NCP개편안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흐름에 일정정도 한국정부도 의식하고 있는 상황. 활용을 고민할 수 있음.

3.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자체로 준 국제기구 성격을 띄고 있음.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국가인권기구에 적극적으로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해줄 것을 요청함.

□ 2012년 7월 OECD와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가 MOU체결.

□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사기업에 대해서도 차별행위(성희롱)에 대해 조사할 수 있음. 2012년도에 개정되었으므로 현재까지 공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건수가 많지 않음.

□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예를 들면 삼성) 인권침해를 저질렀음에도, 국민연금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음.

□ 현지 사업장 노조 및 단체와 공동으로 양국의 국가인권위에 공동 진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4. 투자자 공약

□ 기업들은 노조나 NGO의 눈치를 보지 않지만 투자자의 눈치는 봄.(삼성은 왜 APG의 조사를 받아들였나?)

□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사들을 분석. 공적투자기관(각국 연기금)들은 UN PRI(책임투자원칙)에 가입되어 있거나, 자체 운용기준을 가지고 있음. 이들 기관들에게 문제를 알리는 것이 필요함.(영어 기사 글어 붙여도 좋음.)

□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수출입은행도 자체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음. 수출입은행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 적도원칙: 2003년부터 시작된 대형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들의 자발적 협약. 천만달러 이상의 개발 사업 대출에 있어서 환경보호 및 인권고려를 할 것을 돈을 빌려주기전에 요구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전 세계 77개 주요 금융기관(3개 일본은행, 1개 중국은행)이 참여하고 있으나 한국 금융기관은 참여하고 있지 않음.

5. UN 활용

- 이명박 시대부터 UN 활용이 재조명 되고 있음. <2010년 유엔 의사표현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및 보고서>
- 2013년,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당시에 국내 기업 문제에도 보고관이 관심을 보임.(울산 방문 시 현대차 고공농성 팀 방문, 밀양 방문.)
- 평화로운 집회 자유와 결사, 의사 표현의 자유, 인권옹호자는 물론 다양한 영역의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꾸준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박근혜 시대에 UN에서 권고를 하더라도 무시할 확률은 높지만 쪽팔리게 하는 효과는 큼.
- 2012년도에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이 UN에서 다뤄짐. 다음 검토는 2016년도에 이뤄짐. 국제사회의 흐름을 보아, 기업과 인권문제가 차기 UPR에서는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임. 미리 준비하고 정부에 UPR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